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0. 9. 10 선고 2019나67225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0. 9. 10 선고 2019나67225 판결

서울남부지방법원 2019. 11. 12 선고 2018가단248361 판결

전 문

원고, 항소인A

소송대리인 변호사 현경암

피고, 피항소인B

변론 종결 2020. 7. 16.

판결 선고 2020. 9. 10.

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. 11. 12. 선고 2018가단248361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31,881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

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행부터 제4쪽 제3행의 "부가하여"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.

"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원고와 피고는 2015. 10. 2. "합의서(화해)서"(이하 '이 사건 합의서'라고 한다)를 작성한 사실, 이 사건 합의서에 "합의일 이후에는 원고와 피고는 어떤 경우에도 송사를 하지 않는다."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.

그러나,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과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,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9. 8. 14.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).

살피건대, 이 사건 합의서는 모두 5쪽 분량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여러 분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, 합의서의 기재 자체로도 합의의 범위나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,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의 해결 또는 강제 방안에 대한 아무런 정함도 없는 점,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경위나 합의 이행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에 관한 것이었는지도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, 이 사건 합의서에 '어떠한 경우에도 송사를 하지 않는다'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을 통하여 일체의 재판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.

따라서 이 사건 소가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되었다고 할 수 없다."

○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행의 "보건대" 앞에 "3. 본안에 관한 판단"을 추가한다.

○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9~20행을 삭제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,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소를 각하하여 부당하므로,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함이 원칙이나,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으므로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본안 판단을 하기로 한다.

앞서 본 바와 같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,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의 소 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으므로,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송영환

판사강문희

판사김현성